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62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김용만·강준현·손명수
박민규·이강일·신장식
이정문·전현희·김남근
김현정·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하여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수사기관의”를 “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회(청문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는”을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에”로, “해명하도록”을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해명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
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u>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u>	제15조(고발) ① ----- ----- ----- ----- <u>각각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수사기관의</u> ----- ----- ----- -----.
② (생 략)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회(청문회를 제외한)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③ <u>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
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③ 제1항에도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
-----제3항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② -----제3항에-----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③ -----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있으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해당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은-----

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본회의, 위원회에-----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해명하도록-----

-----본회의, 위원회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한 위원에-----

⑤ (현행과 같음)